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정부 제출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